

화순군향토유적보호관리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1.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2000. 1. 31
- 다. 상 정 일 자 : 2000. 1. 31 (제7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회의)
(제8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 설명요지

- 가. 제안설명 : 환경과장 김 재 월
- 나. 제정사유
 -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유적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함.
- 다. 주요내용
 - 향토유적의 정의규정(안 제2조)
 -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3조)
 - 향토유적 보호위원회 심의사항(안 제4조)
 - 향토유적 지정기준(안 제6조)
 - 향토유적 관리자 지정 및 보존관리(안 제10, 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정열)

-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향토의 역사, 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 문화·유적등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 우리군의 특성상 유·무형의 많은 문화유물과 유적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이의 발굴 및 보존관리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사료되나,
-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현실에 부합되는 규칙을 제정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행. 재정적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것임.

- 조례안의 입법예고,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절차상의 하
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수정가결'

첨 부 : 화순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안(수정안)

화순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안

구 분	집 행 부 안	수 정 안
조례명	○ 화순군향토유적보호관리조례안	○ 화순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	○ ~향토유적(유물을 포함한다)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여 향토문화재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제2조 (정의)	<p>본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p>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로 정의된 것중 국가 지정문화재, 도 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제외하고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정관적 가치가 큰 유형 문화, 무형문화, 기념물, 민속 자료를 말한다. 2.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향토유적 보호관리의 ~향토유적보호위원회 ~ ② ~15인 ~ 군의원 2인과 관계공무원,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 ② ~9인~군의원 1인과 관계공무원 1인, 도 문화재위원 또는 이를 역임한자, 화순군 또는 문화재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자 중에서 분야별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 향토유적 ~	④ 향토문화유산 ~
	⑤ ~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⑤ ~간사는 문화재 업무를 취급하는 문화예술담당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 업무 담당자가 된다.

구 분	집 행 부 인	수 정 안
제4조 (심의사항)	① ~ 1. 향토유적의 ~ 2. 향토유적 ~ 3. 향토유적의 ~ 4. 향토유적의 ~ 5. 문화재 ~	① ~ 문화유산 1. 향토문화유산의 ~ 2. 향토문화유산 ~ 3. 향토문화유산 ~ 4. 향토문화유산 ~ 5. 향토문화유산 ~
제5조 (지정)	향토유적은 ~ 자문을 ~	향토문화유산은 ~ 심의를 ~
제6조 (지정기준)	향토유적은 ~ 유적으로 ~ 1. ~ 문화재 2. ~ 필요한 유적	향토문화유산은 ~ 문화유산으로 1. ~ 문화유산 2. ~ 필요한 문화유산 3. 시·도단위 이상 문화예술경연대회등에서 개인 또는 단체가 우수상 이상 입상한 무형문화유산(신설) 4. 기타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유산(신설)
제7조 (보호구역지정)	① ~ 향토유적 ~ ② 군수는 보호구역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적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내에서의 건축허가 2. 보호구역내에서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① ~ 향토문화유산 ~ ② 보호구역내에서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③ 군수는 보호구역내에서 현상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신설)
제8조 (고시및효력발생)	① ~ 향토유적 ~ 해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향토유적은 ~	① ~ 향토문화유산 ~ 해제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당해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향토유산은 ~

구 분	집 행 부 안	수 정 안
제9조 (지정서 교부)	① ~ 향토유적은 ~ ② ~ 향토유적 ~	① ~ 향토문화유산은 ~ ② ~ 향토문화유산 ~
제10조 (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적 ~ 새마을 지도자 향토유적 ~ ② ~ 유적은 ~ 유적소재지	① 향토문화유산 ~ 점유자, 이장, 향토문화유산 ~ ② ~ 향토문화유산은 ~ 유사소재지
제11조 (보존관 리)	향토유적을 ~ 1. 향토유적은 ~ 2. ~ 향토유적의 ~ 3. 향토유적과 4. 향토유적의 ~ 유적보존 ~ 5. ~ 진입로 정비 ~	향토문화유산을 ~ 1. 향토문화유산은 ~ 2. ~ 향토문화유산의 ~ 3. 향토문화유산과 ~ 4. 향토문화유산의 ~ 문화유산보 존 ~ 5. ~ 향토문화유산과 관련한 진입 로 정비
제12조 (점검)	~ 향토유적을 ~	~ 향토문화유산을 ~
제13조 (경비 보 조등)	① ~ 향토유적 ~	① ~ 향토문화유산 ~
제14조 (집중관 리)	① ~ 공예품등 향토유적 ~ ② ~ 향토유적을 ~	① ~ 공예품, 서지류등 향토문화 유산 ~. ② ~ 향토문화유산을 ~
제15조 (기록작 성보관)	① ~ 향토유적 ~ ② ~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작성을 의뢰하 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① ~ 향토문화유산 ~ ② ~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계도등)	제16조(계도등) ① ~ 향토유적 ~ 계도 ~. ② 향토유적 ~	제16조(홍보등) ① ~ 향토문화유산 ~ 홍보 ~. ② 향토문화유산 ~.

화순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관내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여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토문화 보존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로 정의된 것 중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를 제외하고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과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를 말한다.
2.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불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자문에 응하도록 화순군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9인 이내로 하고, 군의원 1인과 관계공무원 1인, 도문화재의원 또는 이를 역임한자, 화순군 또는 문화재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자 중에서 분야별로 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보존관리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재 업무를 취급하는 문화예술 담당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업무담당자가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심의사항)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유산 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제5조 (지정) 향토문화유산은 군수가 제3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정한다.

제6조 (지정기준) 향토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한다.

1.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2. 보호 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문화유산
3. 시·도단위 이상 문화예술경연대회 등에서 개인 또는 단체가 우수상이상 입상한 무형 문화유산
4. 기타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유산

제7조 (보호구역지정) ①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보호구역내에서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③군수는 보호구역내에서 현상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 (고시 및 효력발생) ①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해제와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당해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③향토문화유산은 고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지정서 교부) ①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교부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자 지정) ①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점유자, 이장,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문화유산은 유산소재지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1조 (보존관리) ①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지정사항 및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한다. (별지 제3호 서식)
3. 향토문화유산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회순군이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향토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군수는 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5. 군수는 향토문화유산과 관련한 진입로 정비, 경내 정화 및 보호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점검) 군수, 읍·면장은 향토문화유산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은 년2회 점검

② 읍·면은 년 4회 점검

제13조 (경비보조 등)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관리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읍·면장에게 지원하고 관리자에 대하여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집중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각, 공예품, 서지류 등 향토문화유산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향토문화유산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이동시는 그 상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기록작성보존) ①군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기록 작성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문화재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홍보 등) ①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항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향토문화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 서식)



(향토문화유산명기재)

지정번호 :

위 치 :

연 혁 :

화 순 군 수

○ 간판의 규격 및 형태는 향토문화유산의 성격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한다.